

제3차 정기총회 및 신년 하례회

○ 일시 : 2019년 2월 11일 (월) 오후 2시 ~ 오후 3시

○ 장소 : 달개비 111호 (02-765-2068)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제3차 정기총회 및 이사회

- 일시 : 2019. 02. 11(월) 14:00 ~ 16:00
- 장소 : 달개비 D룸 (서울특별시 정동위치)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02. 11.(월) 14:00 ~ 16:00
- 장 소 : 달개비 111호
- 성원보고 :
- 안 건 :
 - 전 회의록 채택
 - 제1호 안건. 2018년 사업 및 회계(감사)보고
 - 제2호 안건. 2019년 사업 및 예산(안) 보고 및 의결
 - 제3호 안건. 임원 선출
 - 기타 안건

Ⅱ 회의록 채택

2018년 제2차 정기총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8. 1. 16 (화) 오전11시~오후1시
- 회의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의원식당 목련실
- 회의안건 : 1. 2017년 사업 및 예산보고
2. 2018년 사업 및 예산계획 보고 및 의결
3. 기타안건

- 참석자 이사 및 운영위원, 회원
이은영 양세정 곽노성 김성민 김재철 백병성 조윤미 천규승 최민식 김필재
고형석 최윤선 김준현 정기호 (14명)

- 회의내용
 - 이은영 이사장의 개회로 오전 11시30분에 개회 하다.
 - 조윤미 운영위원장이 2017년 사업 및 예산집행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만장일치로 채택하다.
 - 2017년 9월 창립대회 이후 찬조금 및 회비를 사용하고 2,000만원을 이월하기로 하였으며, 법인 등기 이후 법인계좌로 입금하여 향후 법인 회계 규정에 맞게 집행하기로 하다.
 - 2018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하다. 단 향후 각 분과위원회 별 사업추진 계획을 추가로 보완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 하기로 하다.
 - 2018년 예산계획을 1억5천만원으로 수립하기로 하고 조윤미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사업예산계획을 그대로 채택하다.
 - 정관에 의거하여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누어 회원모집을 추가하며, 정회원의 회비는 년회비 20만원(평생회비 100만원), 기업 및 단체회비 년100만원 이상(평생회비 1,000만원)으로 정하다. 법인설립 당시 신청한 회원 52명을 이사회에서 회원으로 승인하다.

- 국회의원 박찬대, 제윤경,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정운천 (바른정당)을 고문으로 위촉 승인하다. 이후 고문 참여 국회의원이 추가 되는대로 이사회를 열어 추가 승인하기로 하다.
- 기타 보고사항으로 법인 등기를 2018년 1월15일 완료하였으므로 보고하다.
- 기타 논의안건으로 실무자 고용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적절한 실무자를 이사 및 분과위원장, 운영위원 등이 추천하기로 하다.
- 향후 안정적인 사무공간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경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다.
- 2018년 2월말에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창립 기념 포럼을 규모있게 개최하기로 하고 주제를 제안, 기획하기로 하다.
-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홈페이지 www.kcrf2017.org로 개설하기로 하다.
- 이은영 이사장의 폐회선언으로 오후 1시 20분에 폐회하다.

[기록 조윤미 운영위원장]

제2차 정기총회 기념사진



Ⅲ 사업보고

1. 회원사업

□ 2018년 (제2차)정기총회 및 제1차 이사회

- 일 시 : 2018.01.16. (화) 오전 11시 - 오후 1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의원식당(목련실)
- 참석자 : 총 14명 / 임원 및 운영위원장, 회원
이은영, 양세정, 곽노성, 김성민, 김재철, 백병성, 조윤미, 천규승,
유선균, 고희석, 최민식, 김필재, 김준현, 최순화
- 안 건
 - 2017년 사업 및 예산보고 의결
 - 2018년 사업 및 예산계획 보고 의결
 - 창립기념 심포지엄 개최(안) 협의
 - 기타 안건



□ 제2차 이사회

- 일 시 : 2018.04.13. (금) 오전 11시 - 오후 1시
- 장 소 : 소비자권익포럼 회의실
- 참석자 : 총 10명 / 임원 및 운영위원장, 회원
이은영, 양세정, 곽노성, 김성민, 김재철, 백병성, 조윤미, 천규승
김필재, 경수현(실무자)

○ 안 건

- 1/4분기 사업 및 결산보고
- 포럼 회원가입 신청자 의결
- 2/4분기 활동계획 및 협의
- 기타 안건



□ 제3차 이사회

- 일 시 : 2018.06.04. (금) 오전 11시 - 오후 1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의원식당
- 참석자 : 총 16명 / 임원 및 운영위원장, 회원
이은영, 양세정, 광노성, 김성민, 김재철, 강성경, 백병성, 천규승,
조윤미, 최민식, 손영목, 강성진, 고희석, 조영행, 이미선, 경수현
- 안 건
 - 2/4분기 사업 및 결산보고
 - 포럼 회원가입 신청자 의결
 - 3/4분기 활동계획 및 협의
 - 기타 안건



□ 제4차 이사회

- 일 시 : 2018.09.19. (수) 오후 12시 - 오후 2시
- 장 소 : 소비자권익포럼 회의실
- 참석자 : 총 10명 / 임원 및 운영위원장, 회원
이은영, 김성민, 강성경, 손영목, 고희석, 조영행, 조윤미, 최민식,
김보금, 경수현
- 안 건
 - 2018년 상반기 사업 및 결산보고
 - 포럼 회원가입 신청자 의결
 - 2018년 하반기 사업계획
 - 기타 안건



□ 「기업탐방 및 소통&힐링」 행사

- 일 시 : 2018.08.24. (금)
- 장 소 : LG전자 평택디지털파크 및 소풍공원
- 참 가 자 : 총 10명 / 임원 및 운영위원장, 회원
이은영, 곽노성, 김재철, 강성경, 손영목, 이성환, 이정수, 엄윤희,
이선영, 조윤미
- 주요내용
- LG전자 평택디지털파크 견학 및 회원교류



□ 2018년 송년모임

- 일 시 : 2018.12.27.(목) 오후6시-9시
- 장 소 : 암타이 (신사역)
- 참 석 자 : 총 10명 / 임원 및 운영위원장, 회원
이은영, 양세정, 김성민, 백병성, 조윤미, 강성경, 손영목,
이선영, 김혜란, 김보금
- 주요내용 : 회원교류 및 송년회



2. 포럼사업 (공동포럼 / 총8회)

□ 제4차 소비자권익포럼

○ 개요

- 주 제 :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 목 적 : 암호화폐 투자자인 금융소비자 보호 및 합리적인 규제방안 모색
- 일 시 : 2018.02.07. (수) 오전10시-1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박찬대 국회의원,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소비자권익포럼
- 후 원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소비자TV

○ 프로그램

- 사회 : 김준현 의원 (경기도 / (사)소비자권익포럼 골목상권살리기위원장)
- 인사말씀 : 박찬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민 공동대표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이성환 공동대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황선옥 공동대표 (금융소비자네트워크)
- 주제발제
 - 국내외 암호화폐 관리와 소비자보호정책 방안
 (안수현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좌장 : 이성환 공동대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지정토론

이성엽 교수 (고려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조윤미 운영위원장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원종현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최민식 교수 (상명대학교, 소비자권익포럼 ICT정책위원장)

정운영 의장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최재성 사무총장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제5차 소비자권익포럼 /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창립기념

○ 개 요

■ 주 제 :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

■ 목 적 : 헌법상 소비자주권을 선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에 대한 국가의 역할 모색

■ 일 시 : 2018.03.05.(월) 오전 10시-12시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박찬대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오제세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사)소비자권익포럼

■ 후 원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소비자TV

○ 프로그램

■ 제1부 (사)소비자권익포럼 창립기념식

- 사회 : 김준현 의원 (경기도 / (사)소비자권익포럼 골목상권살리기위원장)
- 환영사 : 이은영 이사장
- 인사말씀 : 박찬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운천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 축하인사 : 강정화 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김 현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고문현 회장 (한국협법학회, 송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제2부 제5차 소비자권익포럼

- 사회 : 강성경 사무총장 (소비자권익포럼)
- 주제발제
 - 발제1. 헌법상 소비자기본권과 안전
 (김현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 발제2 시장경제에서 소비자주권과 헌법
 (백병성 이사 /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
- 토론
 - 좌장 이은영 이사장 (소비자권익포럼)
 - 지정토론
 - 김성민 대표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 서희석 교수 (부산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 천규승 이사 ((재)소비자재단)
 - 황의관 선임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 곽노성 교수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특임교수)
 - 김보금 소장 (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 남동일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 이성환 공동대표 (사)녹색소비자연대, 변호사)



□ 제6차 소비자권익포럼

○ 개 요

- 주 제 : 동전없는 사회만들기 활성화 방안
- 목 적 : 현재 진행 중인 '동전 없는 사회 만들기' 사업을 점검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정책방안 모색
- 일 시 : 2018.06.25 (월) 오후2시-4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 윤호중 국회의원, 심기준 국회의원, (사)소비자권익포럼

○ 프로그램

- 사회 : 강성경 사무총장 (소비자권익포럼)
- 인사말씀 : 윤호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은영 이사장 (소비자권익포럼)
- 주제발제
 - 발제1 동전없는 사회를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과 과제
(윤재호 차장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기획팀)
 - 발제2 동전 없는 사회를 통한 사회혁신과 소비자 이익제고 방안
(김성기 이사장 /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 토론
 - 좌장 : 이은영 이사장 (소비자권익포럼)
 - 지정토론
빈재익 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

선웅규 대표 (주식회사 후앤후)

조대형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윤미 운영위원장 (소비자권익 포럼, C&I소비자연구소 대표)



□ 제7차 소비자권익포럼 - 消費者六法 개정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포럼(1차)

○ 개 요

■ 주 제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방안

■ 목 적 :

- 공정위 소관 소비자육법이 그 입법목적인 소비자권익보호에 적합한 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과 더불어 개정방향을 제시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한계를 짚어보고 개정방안을 모색

■ 일 시 : 2018.08.21 (화) 오후2시-5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 박찬대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한국소비자법학회,
(사)소비자권익포럼

■ 후 원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소비자TV

○ 프로그램

■ 사회 : 조윤미 운영위원장 (소비자권익포럼, C&I소비자연구소 대표)

■ 인사말씀 : 박찬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은영 이사장 (소비자권익포럼)

서희석 회장 (한국소비자법학회)

■ 주제발제

- 발제1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 현황과 이슈
(정지연 사무총장 / 한국소비자연맹)
- 발제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방안
(고형석 교수/ 선문대학교, 소비자권익포럼 법제위원장)

■ 토론

- 좌장 :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 지정토론
변용재 위원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김윤태 부회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최정배 서기관 (국회입법조사처)
김세준 교 수 (경기대학교 법학과, 한국소비자법학회 이사)
김호성 과 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제8차 소비자권익포럼 - 消費者六法 개정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포럼(2차)

○ 개 요

■ 주 제 : 『방문판매법』 개정방안

■ 목 적 :

- 공정위 소관 소비자육법이 그 입법목적인 소비자권익보호에 적합한 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과 더불어 개정방향을 제시
- 방문판매법의 한계를 짚어보고 개정방안을 모색

■ 일 시 : 2018.09.19 (수) 오전10시-1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 제윤경 국회의원,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유통법학회
(사)소비자권익포럼
- 후 원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소비자TV, (사)소비자권익포럼

○ 프로그램

- 사회 : 강성경 사무총장 (소비자권익포럼)
- 인사말씀 : 제윤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은영 이사장 (소비자권익포럼)
- 주제발제
 - 발제1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 현황과 이슈
(임보라 사무국장 / 변호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발제2 소비자를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방안
(고형석 교수 /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 토론
 - 좌장 : 최영홍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유통법학회 회장)
 - 지정토론
 - 변용재 위원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 이병준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백대용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 김경자 교수 (가톨릭대학교 소비자학과)
 - 김보금 소장 (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부)
 - 이상협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 제9차 소비자권익포럼

○ 개 요

- 주 제 : 화장품 안전사용을 위한 통합위해평가 방안 모색
- 목 적 : 통합위해평가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화장품위해평가 발전 과정을 검토
- 일 시 : 2018.10.30 (화) 오전10시-12시
- 장 소 : HJ비즈니스센터
- 공동주최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C&I소비자연구소, (사)소비자권익포럼

○ 프로그램

- 사회 : 이선영 (포유미디어 대표)
- 주제발제
 - 발제1 화장품 위해평가시스템과 발전 방안 모색
(민충식 보건연구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팀)
 - 발제2 통합위해성 평가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
(이종현 소장 / EHRNC)
- 토론
 - 좌장 : 이은영 이사장 (소비자권익포럼)
 - 지정토론
 - 윤영미 공동대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정미란 팀장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 임두현 이사 (코스맥스)
 -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 장준기 상무 (대한화장품협회)
 - 곽승준 교수 (창원대학교 생명보건학부)



□ 제10차 소비자권익포럼 / 창립1주년 기념포럼

○ 개 요

- 주 제 :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사후평가와 개정방향' 세미나
- 목 적 : 소비자기본법 내용을 검토하고, 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일 시 : 2018.12.03 (월) 오후1시30분-6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 제윤경 국회의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소비자법학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소비자권익포럼

○ 프로그램

- 제1부 (사)소비자권익포럼 창립1주년 기념식
 - 사회 : 강성경 사무총장 (소비자권익포럼)
 - 환영사 : 이은영 이사장 (소비자권익포럼)
 - 축하인사 :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환영인사 : 이익현 원장(한국법제연구원)
이찬희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서희석 회장(한국소비자법학회, 부산대학교 교수)

■ 제2부 제10차 소비자권익포럼

○ 제1섹션

- 좌장 : 류승훈 교수 (선문대)
- 주제발제
 - 발제1 소비자안전사회구축을 위한 제품안전 확보 방안
(백병성 소장 / 소비자문제연구소)
 - 발제2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식품 회수제도의 개선
(왕승혜 박사 / 한국법제연구원)
- 지정토론
 - 곽노성 교수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특임교수)
 - 김순복 사무처장(한국여성소비자연합)
 - 오규백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소비자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

○ 제2섹션

- 좌장 : 이은영 이사장(소비자권익포럼)
- 주제발제
 - 발제3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 제도의 개선방안
(변웅재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비자인권소위원회 위원장)
 - 발제4 소비자권익보호와 소비자정책 (고형석 교수 / 선문대학교)
- 지정토론
 - 서종희 교수(건국대학교)
 - 최 유 팀장(한국법제연구원)
 - 강성진 교수(인제대학교)
 - 장원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제11차 소비자권익포럼

○ 개 요

- 주 제 : 청소년 금융 교육,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목 적 : 우리나라 소비자의 금융이해력과 선진국 및 국내 금융교육사례 분석을 통해 올바른 금융교육정책 방안을 모색
- 일 시 : 2018.12.06 (목) 오후1시30분-4시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박찬대 국회의원, 한국금융교육학회, (사)소비자권익포럼
- 후원 : (사)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 : 한진수 교수 (경인대학교)
- 개회사 : 천규승 회장 (한국금융교육학회)
- 인사말씀 :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영 이사장 (소비자권익포럼)
- 주제발제
 - 발제1 우리나라 대학생과 성인의 금융이해력 비교
(이윤호 교수 / 순천대학교)
 - 발제2 미국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타난 금융교육 융합사례
(장경호 교수 / 인하대학교)
 - 발제3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육 “씽크머니”
(홍현정 부장 / 한국YWCA연합회)
- 토론
 - 좌장 : 김종호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 지정토론
 - 김기한 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박형준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 박홍신 사무국장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 이옥원 사무국장 (KB금융공익재단)
 - 흥기영 부국장 (매일경제)



3. 연구용역 사업

□ 사업명 : 소비자중심 보건의료체계 개선 방안 연구

○ 목적 : 의료소비자 측면에서 보건의료정책의 효과성 및 보완 필요사항을 검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정보 확대 방안을 제안

○ 개요

- 기간 : 2018.09.03. - 11.30
- 발주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집행액 : 19,800,000원

○ 주요내용

-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현행 보건의료정책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소비자정책간담회 및 보건의료 정책과제 제안 포럼 개최 : 총 6회
 - 건강보험 및 비급여 의약품사용 / 환자안전 / 요양병원과 제도
 - 합리적인 소비행태 / 서비스와 인력 / 의료정보 활성화

회차	일시	장소	주제	규모
1회	2018.7.6.(금)	한국소비자연맹 강당	의료행위의 급여화 확대 정책과 실손보험 문제와 대책	15명
2회	2018.9.3.(월)	한국소비자연맹 강당	소비자를 위한 의약품 정책 개선방안	18명
3회	2018.9.11.(화)	한국소비자연맹 강당	안전한 의료환경 구현을 위한 과제	16명
4회	2018.11.7.(수)	서울여성플라자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과 발전과제	17명
5회	2018.11.23.(금)	서울여성플라자	보건의료서비스의 변화요구와 인력	14명
6회	2018.11.30.(금)	서울여성플라자	소비자를 위한 의료정보 기술전략	16명

-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이용 정보 확대 방안 제안
-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소비자 요구도 설문조사
- 이론적 고찰 및 보건의료소비자 정책제안 : 최종 보고서 제출

■ 보건의료정책간담회 개최모습

제1차 간담회 - 의료행위의 급여화 확대정책과 실손보험 문제와 대책 (2018.7.6.)



제2차 간담회 - 소비자를 위한 의약품 정책 개선방안 (2018.9.3.)



제3차 간담회 - 안전한 의료환경 구현을 위한 과제 (2018.9.11.)



제4차 간담회 -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과 발전과제 (2018.11.7.)



제5차 간담회 - 보건의료서비스의 변화요구와 인력 (2018.11.23.)



제6차 간담회 - 소비자를 위한 의료정보 기술전략 (2018.11.30.)



4. 언론보도 : 총 57건

- (2018.02.07)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안수현 교수 "암호화폐 정보 비대칭 심각, 세심한 규제체계 마련 필요" 등 3건
- (2018.03.02)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대담]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초대 이사장 "온라인 소비자 운동 펼치겠다"
- (2018.03.05) 한국농어촌방송, [영상뉴스](사)소비자권익포럼, '헌법상 소비자 주권과 국민안전' 주제 창립기념 포럼 개최 등 3건
- (2018.06.25) 한국농어촌방송, [영상뉴스] 소비자권익포럼, "한국은행의 동전 없는 사회만들기, 소비자 관점에서 이익 극대화해야" 등 2건
- (2018.07.18.) 쿠키뉴스, "비급여도 의료행위다" 통제 필요성 대두 등 2건
- (2018.07.28.) 메디게이트뉴스, "발사르탄 사태 재발방지 위해 공동·위탁 생동성시험 제한" 등 4건
- (2018.08.09.) 투데이신문,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약사회 반발에 또 불발... 속타는 소비자 등 4건
- (2018.08.20.) 메디칼업저버, 응급실 폭행금지 한목소리...각론엔 '이견'
- (2018.08.21.)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소비자권익포럼, 시장 변화에 따른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 등 4건
- (2018.09.14.) 코스메틱매니아뉴스, 화장품 위해평가 현지의 목소리로 듣는다! 등 3건
- (2018.09.19.) 한국농어촌방송, [영상뉴스] 소비자권익포럼, '방문판매법 개정 방안' 토론회... 등 3건
- (2018.09.20.) 분당신문, 성남시의료원, 성분명처방 실현 가능한가? 등 5건
- (2018.10.08.) 약사공론,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으로 약사 상담역량 증진"
- (2018.10.16.)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칼럼] 유튜브 소비자 운동이 시급한 이유
- (2018.10.22.) 뷰티경제, 화장품 안전사용 위해평가' 포럼 등 5건
- (2018.11.06.)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칼럼] 빈 손 정무위 국감 유감... 소비자보호 정책 부실이 내수부진 촉발
- (2018.11.13.) 현대건강신문, 의료기관 인증혁신안 마련...청소 사라졌지만 반짝 인증 '여전'등 4건
- (2018.11.15.) 쿠키뉴스, "여전히 싸구려 죽음"..병원은 생애말기돌봄 준비됐나 등 5건
- (2018.12.03.)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가 안전한 사회 만들려면 '제품 안전' 확보해야" 등 5건

IV 결산보고

2018년 결산보고

(기간 2018년1월1일~12월31일, 단위 원)

수 입		지 출	
1. 회비	14,000,000	1. 인건비	9,000,000
- 정회원	14,000,000	- 운영위원장 활동비	6,000,000
		(500,000 X 12개월)	
		- 실무자 활동비	3,000,000
2. 기부금	8,750,000	(200,000 X 12개월)	
		2. 경상경비	30,722,750
3. 찬조금	3,100,000	- 임대보증금	10,000,000
		- 임대료 및 사용료	13,263,310
4. 사업수입	23,200,000	- 비품구입비	3,594,090
- 연구용역	23,200,000	- 사무행정비	3,214,160
		(회계사무비, 교통비, 통신비, 대여비 등)	
		- 제세공과금	651,190
5. 이월금	50,000,000	3. 사업비	29,254,310
		- 용역사업비	19,800,000
6. 기타	10,327,060	- 포럼운영비	9,454,310
- 사무실 보증금	10,000,000	(사례비, 인쇄비, 식비, 다과비 등)	
- 기수금(조사원세금)	296,340	4. 차기이월금	10,700,000
- 기타(이자 등)	30,720		
		5. 대여금	30,000,000
	109,677,060		109,677,060

재 무 상 태 표

제 1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단위 : 원)

과 목	제1(당기)	
	금 액	
자 산		
I . 유 동 자 산		40,700,000
(1) 당 좌 자 산		40,700,000
보 통 예 금		10,700,000
단 기 대 여 금		30,000,000
(2) 재 고 자 산		0
II . 비 유 동 자 산		331,200
(1) 투 자 자 산		0
(2) 유 형 자 산		0
(3) 무 형 자 산		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331,200
기 타 보 증 금		331,200
자 산 총 계		41,031,200
부 채		
I . 유 동 부 채		198,000
예 수 금		198,000
II . 비 유 동 부 채		0
부 채 총 계		198,000
자 본		
I . 자 본 금		50,000,000
기 본 기 금		50,000,000
II . 자 본 잉 여 금		0
III . 자 본 조 정		0
IV . 기 타 포괄손익누계액		0
V . 결 손 금		9,166,800
미 처 리 결 손 금		9,166,800
(당 기 순 손 실)		
당기 : 9,166,800 원		
전기 : 0 원		
자 본 총 계		40,833,20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41,031,200

손익계산서

제 1(당)기 2018년 1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단위 : 원)

과 목	제1(당)기	
	금 액	
I. 매출액		40,850,000
용역수입	19,800,000	
사업수입	3,400,000	
회비수입	14,300,000	
찬조금·후원금수입	3,350,000	
II. 매출원가		0
III. 매출총이익		40,850,000
IV. 판매비와관리비		49,822,577
여비교통비	2,449,000	
통신비	222,160	
세금과공과금	425,000	
지급임차료	3,352,300	
보험료	43,010	
운반비	14,300	
도서인쇄비	1,904,240	
회의비	2,133,070	
사무용품비	2,721,810	
소모품비	912,180	
지급수수료	13,573,400	
건물관리비	2,182,107	
연구사업비	19,800,000	
V. 영업손실		8,972,577
VI. 영업외수익		30,723
이자수익	4,687	
잡이익	26,036	
VII. 영업외비용		224,946
잡손실	224,946	
VIII. 법인세차감전손실		9,166,800
IX. 법인세등		0
X. 당기순손실		9,166,800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1(당기) 2018년 01월 3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19년 03월 31일

회사명 :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단위 : 원)

과 목	제 1(당기)	
	금 액	
I. 미 처 리 결 손 금		9,166,800
1. 전 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0	
2. 회 계 변 경 의 누 적 효과	0	
3.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0	
4.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0	
5. 중 간 배 당 금	0	
6. 당 기 순 손 실	9,166,800	
II. 임 의 적 립 금 등 의 이입액		0
1.	0	
2.	0	
합 계		-9,166,800
III.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0
1. 이 익 준 비 금	0	
2. 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0	
3. 배 당 금	0	
가. 현 금 배 당	0	
나. 주 식 배 당	0	
4. 사 업 확 장 적 립 금	0	
5. 감 채 적 립 금	0	
6. 배 당 평 균 적 립 금	0	
IV. 차 기 이 월 미 처 리 결손금		9,166,800

※ 본 재무제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

2018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단위: 원)

차 변		계 정 과 목	대 변	
잔 액	합 계		합 계	잔 액
40,700,000	136,796,370	유 동 자 산	96,096,370	
40,700,000	136,796,370	< 당 좌 자 산 >	96,096,370	
10,700,000	85,996,370	보 통 예 금	75,296,370	
30,000,000	30,000,000	단 기 대 여 금		
	20,800,000	미 수 금	20,800,000	
331,200	10,331,200	비 유 동 자 산	10,000,000	
331,200	10,331,200	< 기 타 비 유 동 자 산 >	10,000,000	
	10,000,000	임 차 보 증 금	10,000,000	
331,200	331,200	기 타 보 증 금		
	30,866,807	유 동 부 채	31,063,807	198,000
	16,333,807	미 지 급 금	16,333,807	
	576,180	예 수 금	774,180	198,000
	13,966,820	미 지 급 비 용	13,966,820	
		자 본 금	60,000,000	60,000,000
		기 본 기 금	60,000,000	60,000,000
9,166,800	18,333,600	이 익 잉 여 금	9,166,800	
9,166,800	9,166,800	이 월 결 손 금		
	9,166,800	미 처 리 결 손 금	9,166,800	
	60,047,623	손 익	60,047,623	
	60,047,623	손 익	60,047,623	
	40,850,000	매 출	40,850,000	
	19,800,000	용 역 수 입	19,800,000	
	3,400,000	사 업 수 입	3,400,000	
	14,300,000	회 비 수 입	14,300,000	
	3,350,000	찬 조금. 후원금수입	3,350,000	
	49,822,677	판 매 관 리 비	49,822,677	
	2,449,000	여 비 교 통 비	2,449,000	
	222,160	통 신 비	222,160	
	426,000	세 금 과 공 과 금	426,000	
	3,362,300	지 급 일 차 료	3,362,300	
	43,010	보 험 료	43,010	
	14,300	운 반 비	14,300	
	1,994,240	도 서 인 쇄 비	1,994,240	
	2,133,070	회 의 비	2,133,070	
	2,721,810	사 무 용 품 비	2,721,810	
	912,180	소 모 품 비	912,180	
	13,673,400	지 급 수 수 료	13,673,400	
	2,182,107	건 물 관 리 비	2,182,107	
	19,800,000	연 구 사 업 비	19,800,000	

합계잔액시산표

2018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단위: 원)

차 변		계 정 과 목	대 변	
잔 액	합 계		합 계	잔 액
	30,723	영 업 외 수 익	30,723	
	4,687	이 자 수 익	4,687	
	26,036	잡 이 익	26,036	
	224,946	영 업 외 비 용	224,946	
	224,946	잡 손 실	224,946	
50,198,000	337,302,746	합 계	337,302,746	50,198,000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귀중

이 법인의 2018 회계연도(제1기: 2018. 1. 1. ~ 2018. 12. 31.) 회계자료를 감사한 결과 수입·지출이 공익법인으로서의 일반적인 회계준칙과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 의한 적법·타당한 것이었으며 결산서의 내용과 상위 없으므로 이를 보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감사 이 동 형



V 2019년 사업계획

1. 회원사업

(1) 회의

정기총회

- 매년 회계연도 경과후 60일 이내 (정관 18조)
- 2019년 2월11일 (월) 오후2시 - 오후4시 (달개비)
- 법인설립 시 의무 회원수 50명 이상
- 개회 요건 : 등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 / 참석회원의 과반수 의결

임시총회 : 필요시 소집

이사회

- 정기이사회 년2회 (정관 23조) 필요시 임시이사회
- 이사장 / 공동대표 포함 20인 이내 이사
 - 現 등기이사(8명) : 이은영/양세정/김성민/곽노성/김재철/강성경/백병성/조윤미

운영위원회

-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지부장 : 필요시 소집
- 실질적인 사업의 기획과 운영

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 필요시 소집

[참조]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조직도 (예시)



(2) 회원모집 및 회원서비스

□ 회원의 종류 (정관 5조) 정회원 / 준회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단체, 법인

□ 회비 규정 및 2019년도 목표

- 정회원 (권리를 가진 회원)

평생회원 1,000,000원×20명=20,000,000

포럼회원 년 200,000원×100명=20,000,000

기업회원 1,000,000원×20곳=20,000,000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정관과 기타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②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정회원은 법인에서 발행하는 각종 소식지와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④정회원은 법인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구와 회의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준회원 (회비 의무없이 등록만 - 포럼에 참여, 홍보 등)

□ 분과위원회의 구성

- 각 분과위원회 별로 5-10명 내외의 정회원 (포럼회원)을 구성

- 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포럼개최, 간담회 개최, 캠페인 등 활동 추진

- 분과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력, 예산 지원

□ 고문단 구성 (2019. 1. 현재)

오제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박찬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제윤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변재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운천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비자권익포럼, 심포지엄, 행사 등 공동개최 및 초청

-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정책개발 등

□ **회원서비스**

- 뉴스레터 (온라인 소식지) 제작 발송
- 홈페이지 유지관리 www.kcrf2017.org

2. 포럼 사업

- **목적** : 정부 각 부처별 소비자관련 이슈를 발굴하여 소비자피해예방과 권익옹호를 위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소비자권익포럼"운영
- **개최 / 장소** : 매월 1회 원칙 (년 10회 이상) / 국회의원회관 등
- **참석인원** : 회당 50명 이상 (연인원 500명 이상)
- **포럼주제(제안사항)** :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시 원칙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강화 및 선진화 방안 모색
 - 농산물 미생물 안정성 강화방안 모색
 -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소비자육법 개정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포럼(3회)
(표시광고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 보건의료 서비스 요구 변화와 신규 인력 및 직종개발
 - 소비자를 위한 해양 및 항공 안전 강화 방안
 -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과 실효적 정책 모색
 - 합리적인 기술규제와 소비자보호 정책
 - 안전한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방안
 - 골목상권 살리기와 소비자협력체계 모색
 - 공동포럼 : 타 단체 프로젝트와 연계 (예산지원 확보)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포럼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등

<참고- 2019년 소비자권익포럼 진행사항>

□ 제12차 소비자권익포럼

○ 개 요

- 주 제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강화 및 선진화 방안 모색
- 목 적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의 법적 한계와 이로인한 소비자피해 구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강화방안을 모색함
- 일 시 : 2019.1.14 (월) 오후2시-4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공동주최 : 제윤경 국회의원·소비자가만드는신문·(사)소비자권익포럼

○ 프로그램

- 사회 : 백병성 소장 (소비자문제연구소, (사)소비자권익포럼 이사)
- 인사말씀 :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영 이사장 (소비자권익포럼)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
- 주제발제
 - 발제1 구멍 뚫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현황과 문제점 진단
백진주 부장 (소비자가만드는신문 기획팀)
 - 발제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실효성 강화 방안
최병록 교수 (서원대학교)
- 토론
 - 좌장 : 이성환 공동대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지정토론
변웅재 변호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장)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서희석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호 고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조윤미 대표 (C&I소비자연구소)
송상민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 제13차 소비자권익포럼 (예정)

○ 개 요

- 주 제 :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 목 적 : 변화하는 보건의료 소비자요구에 기반한 공급체계 혁신방안과 새로운 직능,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 일 시 : 2019. 2.22 (금) 오전10시-1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오제세 국회의원·보건의료산업학회·(사)소비자권익포럼

○ 프로그램

- 사회 : 백병성 소장 (소비자문제연구소, (사)소비자권익포럼 이사)
- 인사말씀 : 오제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영 이사장 (소비자권익포럼)
황병덕 회장 (보건의료산업학회)

■ 주제발제

- 발제1 소비자니즈에 기반한 보건의료서비스 변화와 과제
김태현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발제2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인력정책
이기효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 토론

- 좌장 : 이성환 공동대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지정토론
조덕영 교수 (보건의료산업학회 전략기획부회장,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윤미 대표 (C&I소비자연구소)

3. 연구용역 사업

□ 목적 : 소비자 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법, 제도, 정책을 소비자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주요연구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정부연구용역 수행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 방향 연구
- 신기술, IT융합기술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과 제품 특성 분석
- 해외 규제 및 소비자보호 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4차산업과 관련한 법과 제도등 규제분석
- 선제적인 소비자보호 정책 수행을 위한 법체계, 거버넌스 구축 방안 모색
- 4차 산업혁명시대 민간 소비자운동의 역할과 참여 확대 방안 등
- 그밖에 연구용역 등에 전체 또는 부분적인 참여 방안 모색함

VI 2019년 예산계획

2019년도 수입 및 지출예산

(단위 원)

수 입		지 출	
1. 회비	25,000,000	1. 인건비	12,000,000
- 정회원	25,000,000	- 실무책임자 활동비	6,000,000
평생회원 1,000,000*10명=	10,000,000	(500,000 X 12개월)	
포럼회원 200,000*50명=	10,000,000	- 업무지원비	6,000,000
기업회원 1,000,000*5곳=	5,000,000	(500,000 X 12개월)	
- 준회원			
2. 기부금	15,000,000	2. 경상경비	8,000,000
- 현금 및 물품후원	15,000,000	- 사무실 임대료	7,200,000
		(600,000 x 12개월)	
		- 비품구입비	800,000
3. 찬조금	5,000,000		
		3. 사업비	100,000,000
4. 사업수입	50,000,000	- 회원프로그램	3,000,000
- 연구용역	50,000,000	- 포럼운영 (총10회)	17,000,000
		- 용역사업	50,000,000
5. 이월금	10,700,000	- SNS사업비	30,000,000
- 2018년 이월금	10,700,000		
6. 대여금 상환	30,000,000	4. 차기이월금	20,000,000
7. 기타	4,300,000	5. 기타	
	140,000,000		140,000,000

VII 임원 선출

1. 공동대표 선임의 건

(1) 공동대표 현황

성명	임기(2년)	소속 / 직위	위원회
양세정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 교수	금융소비자위원회 위원장
김성민	2017.09.13. ~ 2019.09.12.	前 소비자TV / 대표	게임사행산업위원회 위원장
곽노성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 특임교수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위원장

(2) 공동대표 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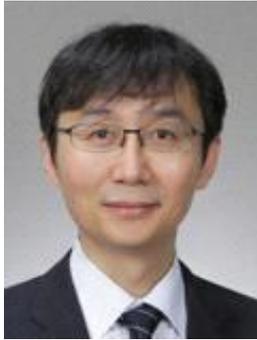
성명	회원자격	사유
곽노성	공동대표 / 등기임원 / 평생회원	사임 의사

(3) 신임 공동대표 선출

- 정관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현재 공동대표 2인 추대 선출
- 추대 후보 현황

성명	임기	소속 / 직위	비고
서희석	2019.02.11.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	평생회원
조윤미	~ 2021.02.10	(주)씨앤아이소비자연구소 / 대표	現 (사)소비자권익포럼 운영위원장 평생회원

■ 공동대표 후보 : 서희석(1968.5.13. 남)



- 고려대 법학사
일본 히토츠바시(一橋대)대학 대학원 법학석사·박사
- (전)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한국소비자원 비상임이사
법무부 민정개정위원
공정위 규제개혁위원
국무조정실 국정과제 평가위원

-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장
산자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 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 공동대표 후보 : 조윤미 (1966.8.15., 여)



- 정신여자고등학교 졸업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졸업 (학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졸업 (석사)

- (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국장, 본부장,
상임위원, 공동대표

한국소비자티브이 부사장
- (현) ㈜씨앤아이소비자연구소 대표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
흡연제로네트워크 공동대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 이사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 비상임 이사

2. 이사 사임의 건

(1) 이사 사임

성명	회원자격	사유
곽노성	공동대표 / 등기임원 / 평생회원	사임 의사

제10조(임원의 구성 및 자격) ①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 2. 공동대표 5인 이내**
3. 이사 20인 이내 (이사장, 공동대표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②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본 법인을 대표한다. 이사장, 공동대표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공동대표는 이사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본 법인을 대표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되며, 운영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은 이사회, 고문단 또는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 한다.

VIII 기타 안건

1. 사무총장 선임의 건

현재 사무총장 현황

성명	임기	소속 / 직위	비고
김재철	2017.09.13.	김재철법률사무소 / 대표 변호사	생활화학제품안전위원회 위원장
강성경	2019.09.12.	(주)큐브이에스비즈 / 부사장	기업협력위원회 위원장

現 김재철 협동사무총장의 사임의사에 따라 신임 사무총장 추대

성명	임기	소속	회원자격
김혜란	2019.02.11. ~ 2021.02.10	법무법인 "인" / 변호사	2018.06.04. 제3차이사회 승인 現 생활안전위원회 위원장 / 평생회원

2. 실무자 선임의 건

경수현 팀장 : 2018년 12월6일 사직

신임 팀장 : 이은경 (여, 47세)

배화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주)소프트매직 과장, (주)세일포트마 차장, (주)디엑스코리아 차장

- (주)씨앤아이소비자연구소 팀장

- 2019년 2월11일 출근

3. “(사)소비자권익포럼” 이슈활동 결정 과정 협의

□ 취지

- 국가정책, 소비자문제,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회적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소비자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사)소비자권익포럼의 설립취지에 따라 회원사간의 공유와 협의를 통한 성명서 발표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성명서 및 보도자료

- **작성** : 정회원은 누구나 작성 가능함.
- **정책위원회** : (위원장 백병성) 검토
- **공유**
 - 성명서는 모든 정회원에 공유(**단체카톡**(권장), 문자, 이메일, 밴드 등)함.
 - 오전 9시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즉시 할 수 있음
- **의견표명** : 정회원은 해당 성명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 **의사결정 및 언론배포**
 - 오전 9시 공유한 성명서에 대해 오후 12시까지 정회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정회원의 찬성하는 것으로 가름함.
 - 이사장 승인 또는 공동대표 2인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는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함.
 -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 정책위원회 주관하에 논의할 수 있음.

定 款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법인은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Consumer Rights Forum(KCRF)”이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소비자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정책, 소비자행동,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소비자중심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필요에 의해 국내외 지역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비자정책 연구, 소비자 조사 및 모니터링, 포럼 사업
2. 소비자 권익옹호를 위한 법제 연구 및 제도화 관련 사업
3.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소비자정보 생산과 소통강화 사업
5. 소비자정책 개발에 관한 국회와의 협력 사업 및 의정활동 지원 활동
6. 기타 법인 목적과 관련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종류 및 자격) ①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 법인)로 한다.

②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단체, 법인으로 한다.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눈다.

③모든 회원의 입회절차, 회비납부방법 등 본 정관에 정하지 않은 회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정관과 기타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②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정회원은 법인에서 발행하는 각종 소식지와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④정회원은 법인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구와 회의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이사회 및 상임집행위원회의 각 결의사항 이행
3. 연회비, 기타 분담금의 납부
4.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법인의 모든 회원은 이사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또한 회원의 사망은 탈퇴로 간주한다.

제9조(회원의 징계)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는 결정전에 그 대상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및 자격) ①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공동대표 5인이내
3. 이사 20인 이내(이사장, 공동대표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②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 법인을 대표한다. 이사장, 공동대표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공동대표는 이사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본 법인을 대표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운영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은 이사회, 고문단 또는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은 회원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②공동대표는 이사장을 보필하며, 이사장의 유고시나 공석일 경우 이사회에서 1인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여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 의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②임원 의 해임은 재적회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회원 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 의 구성) 총회는 법인 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 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의 선출 및 해임 에 관한 사항
2. 법인 의 해산 및 정관 변경 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 의 처분 및 취득 과 자금 의 차입 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 의결이 있을 때
3. 감사가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
4.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이사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개최 및 의결방법) ①각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총회의 의사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총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재적회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총회의 소집 및 의결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회의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임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총회 회원총수 및 출석한 회원수
3. 의결사항
4. 의사의 경과와 발언 요지

②의장은 회의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 구성) ①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③고문은 필요시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임 추천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그 기능에 속하는 사항의 세부적인 결정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임받은 사항의 의결 및 그 집행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회의 의결권 제한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이사 총수 및 출석한 이사수
3. 의결사항
4. 의사의 경과와 발언 요지

②의장은 회의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기 구

제29조(기구)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

1. 고문단 및 자문위원회
2.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3. 사무국

제30조(고문단) ①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단을 둔다.

②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고문단은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자문하며, 일정 인원의 이사 및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31조(자문위원회) ①법인의 운영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기타 자문위원회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2조(운영위원회의 업무와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법인의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한다.

②운영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지부 대표 및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겸임할 수 있으며, 이사가 아닌 운영위원장은 고문단,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④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⑤운영위원회의 산하에 업무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 ⑥운영위원회는 사무국의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 ⑦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33조(사무국)** ①법인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실무적 집행, 문서의 기록과 보전 관리,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 ②사무국에는 사무총장, 본부장, 국장, 간사 등으로 구성되며,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③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관한 사무국의 인사·복무·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산과 회계

- 제34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5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6조(운영재원)** ①법인의 운영재원은 회비, 특별회비, 수수료, 분담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법인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 등은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③회비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 제37조(회계)** ①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법인이 목적사업 달성에 부수적인 수익사업을 할 경우,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한다.

- 제38조(예산 및 결산)** ①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

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이 때,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의 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③법인의 수지계산에 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월차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충당금으로 채우고 그 차익이 남을 때에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얻어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적립시킨다.

④예산의 집행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결재단계를 거쳐 사무국에서 집행하며, 사무국 운영의 일상적인 경비의 지출사항은 사무총(국)장이 전결 처리한다. 단, 이사회 심의·의결 후 제17조에 의한 총회 승인 전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한다.

⑤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이사장과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39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준용규정) 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또는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법인의 초대임원 및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창립총회에서 선출 또는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초대임원의 임기종료일은 법인등기를 필한 날부터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2017년 9월 13일

■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일하는 사람들 ■

※ 고문단

- 제윤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 오제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 박찬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 정운천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변재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이사장

- 이은영 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17대 국회의원)

※ 공동대표

- 양세정 교수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현)한국소비자학회회장)
- 곽노성 교수 (한양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전)식품안전정보원장)
- 김성민 대표 (소비자TV)

※ 사무총장

- 강성경 부사장 (QVS biz)
- 김재철 변호사 (김재철 법률사무소,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 이사

- 백병성 소장 (소비자문제연구소, (전)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 조윤미 대표 (C&I소비자연구소,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감사

- 이동형 변호사 (법무법인 공존)

※ **분과위원회 (위원장)**

- 운영위원회 : 조윤미 대표 (C&I소비자연연구소)
- 정책위원회 : 백병성 소장 (소비자문제연구소)
- NGO협력위원회 : 천규승 이사 (재단법인 소비자재단)
- 기업협력위원회 : 강성경 사무총장 (QVS biz 부사장)
- 지방소비자권익위원회 : 김보금 소장(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 생활화학제품안전위원회 : 김재철 변호사 (김재철 법률사무소)
- 과학기술위원회 : 이동형 변호사 (법무법인 공존)
- 식품안전위원회 : 유선균 교수 (중부대학교 한방건강기능식품학과)
- 법제위원회 : 고희석 교수 (선문대 법학과)
- 정보통신위원회 : 최민식 교수 (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 안전안심농산물위원회 : 김필재 지회장(대한민국GAP연합회 충청)
- 게임사행산업위원회 : 김성민 대표 (소비자TV)
- 골목상권상생위원회 : 김준현 의원 (경기도)
- 교육위원회 : 최순화 원장 (소비자교육문화정보원)
- 녹색구매활성화위원회 : 손영목 대표(재)한국토양자원연구소
- 생활안전위원회 : 김혜란 변호사 (법무법인 인)
- 미디어 위원회 : 이선영 대표 (포유미디어)

■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이사 ■

이은영 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17대 국회의원)

양세정 교수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현)한국소비자학회회장)

곽노성 교수 (한양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전)식품안전정보원장)

김성민 대표 (소비자TV)

김재철 변호사 (김재철 법률사무소,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강성경 부사장 (QVS biz)

백병성 소장 (소비자문제연구소, (전)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조윤미 대표 (C&I소비자연구소,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운영위원 ■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정회원은 포럼 운영위원으로 함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www.kcrf2017.org

(우)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20 맨하튼21빌딩 921호

☎ 전화 02-780-9263 ☒ 팩스 02-780-9264

대표메일 cicri2017@gmail.com (휴대전화 010-6205-9263)

☞ 후원계좌 (국민은행) 816901-04-253130 (사)소비자권익포럼
